

「2025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내 뿌리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2025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합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5년 3월 1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I |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명) 2025년 뿌리산업(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5. 2월 ~ 12월
- (총괄기관/전담기관) 경기도·12개 시군*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참여시군 :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성시, 연천군, 용인시, 의왕시, 포천시, 화성시
- (지원대상) 사업비 출연 12개 시군 소재 도내 뿌리기술 기업
(14대 뿌리산업 품목 영위기업) * 참고2,3 자료(p.11~15) 참조
- (사업내용)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①디지털 공정혁신, ②기술 품질, ③기업애로 등 3개분야 9개 단위사업 맞춤형 지원
- (지원금액) 기업 당 1백만원 ~ 50백만원 이내(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한도 5천만원까지)

구분	단위사업명	지원내용
I 디지털 공정혁신	① 디지털 제조혁신	· 현장 맞춤형 제조공정로봇 도입 지원
	② 노후 생산설비 장비 개선·교체	· 노후된 설비 및 장비 등 개선·교체비 지원
	③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개선비용 지원
II 기술품질	④ 시제품(금형) 제작	· 시제품 제작 및 금형 제작지원
	⑤ 시험분석	· 제품 성능 신뢰도 확인 시험인증 비용지원
	⑥ 인증획득	공급자품질인증
시스템인증		· ISO45001(안전), ISO14001(환경) 등
혁신형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등
III 기업애로	⑦ 기업애로컨설팅	· 뿌리기술, 인사/노무 등 컨설팅 지원
	⑧ 국내외 전시회	· 국내외 온오프라인 전시회 참가비 지원
	⑨ 마케팅	· 홈페이지, CI제작, 동영상 제작지원

□ 세부 과제별 지원내용(과제별 소요비용의 80%이내, 연간 50백만원 한도 지원)

※ 최대한도 50백만원 내 복수 신청이 가능하며 시군별 예산에 따라 최대 지원한도가 상이함

구분	단위 지원사업	세부내용	최대 지원한도 (단위 : 만원)
디지털 공정 혁신	①디지털 제조혁신	노동 집약적 뿌리기업에 생산성과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맞춤형 제조 공정 로봇 도입, 스마트화 지원	5,000
	②노후 생산설비,장비 개선·교체	사업장 공장 내 뿌리공정 관련 생산라인 등 노후된 설비 또는 장비부품 등에 대한 개선 및 개보수, 교체비 지원	2,000
	③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화학물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시설 개선비 지원	1,000
기술 품질	④시제품(금형) 제작	신규 아이템 창출, 제품 테스트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 등의 과제를 추진하는 뿌리기업에 소요비용 지원	2,000
	⑤시험분석	뿌리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성능 신뢰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성능성분 시험인증비용 지원	100
	⑥인증획득	국내외 대기업, 원청업체 요구 등으로 품질·산업 안전 인증이 필요한 기업에 별도의 컨설팅 진행 등을 통해 인증 획득을 위한 전과정 지원	(공급자 인증)1,000 (시스템 인증)400 (혁신형 인증)300
기업 애로	⑦기업애로 컨설팅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하여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영 애로 해소를 지원	300
	⑧전시회 참가	국내외 부품소재 및 자동차 등 산업전시회, 수출상담회 참가를 지원하여 도내 뿌리기업 제품 전시와 홍보 지원	(해외 전시회)400 (국내 전시회)300
	⑨마케팅	홈페이지 제작, CI제작, 제품촬영, 동영상 제작 등 기업/제품/기술에 대한 홍보 지원	300

□ 세부 지역별 지원건수 (예정)

(단위 : 건)

구분	단위 지원사업	광명	군포	김포	부천	수원	시흥	안성	연천	용인	의왕	포천	화성
합계		9	11	24	6	6	45	14	8	5	6	10	14
디지털 공정 혁신	①디지털 제조혁신	0	0	0	0	0	0	1	0	0	0	0	1
	②노후 생산설비,장비 개선·교체	1	2	4	2	1	8	4	2	2	2	5	2
	③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0	0	1	0	1	4	1	1	0	0	0	1
기술 품질	④시제품(금형) 제작	1	0	3	0	1	0	1	0	3	0	2	2
	⑤시험분석	1	3	1	0	0	5	0	2	0	0	0	2
	⑥인증획득	3	3	10	1	3	12	3	3	0	3	3	4
기업 애로	⑦기업애로 컨설팅	0	1	0	0	0	3	1	0	0	0	0	0
	⑧전시회 참가	1	1	0	0	0	4	2	0	0	0	0	0
	⑨마케팅	2	1	5	3	0	9	1	0	0	1	0	2

※ 지원건수는 기업 수요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지역별 지원 최대한도

(단위 : 만원)

지역	① 디지털 제조혁신	② 노후 생산설비 개선·교체	③ 유해물질설비 취합·개선	④ 시제품(금형) 제작	⑤ 시험분석	⑥ 인준획득	⑦ 기업애로 컨설팅	⑧ 전시회 참가	⑨ 마케팅
광명	-	2,590	-	2,000	100	1,000	-	400	300
군포	-	1,795	-	-	100	300	300	300	300
김포	-	2,000	790	2,000	100	400	-	-	300
부천	-	1,500	-	-	-	400	-	-	200
수원	-	2,000	560	2,000	-	400	-	-	-
시흥	-	1,000	1,000	-	100	1,000	300	400	300
안성	5,000	1,000	1,000	2,000	-	300	300	400	300
연천	-	1,500	1,000	-	100	300	-	-	-
용인	-	1,295	-	1,400	-	-	-	-	-
의왕	-	1,745	-	-	-	400	-	-	300
포천	-	2,000	-	2,000	-	300	-	-	-
화성	5,000	1,795	1,000	2,000	100	400	-	-	300

※ 지역별 지원 한도는 시군별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III 지원계획

I ① 디지털 제조혁신 지원 [최대 지원한도 5천만원]

- (목적) 노동 집약적 뿌리기업에 생산성과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맞춤형 제조 공정 로봇 도입, 스마트화 지원
- (지원범위)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지원(자부담 20% 이상)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5,000만원
- (지원내용) 자동화 시스템 구축 위한 현장 맞춤형 제조 공정 로봇 도입 지원
- (추진방법) 협약체결 후 과제 착수 시 1차 지원금(선금) 지급(70%), 제조공정 설치 확인 완료 후 2차 지원금(30%) 지급여부 결정 후 지급

*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사업기간+3개월) 필수 제출**(발행비용은 기업부담)

** 협약 전 제조공정 솔루션 도입을 위한 **선정기업→대행기관 간 용역계약 체결 필수**

- 1) (서류 및 발표심사)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서류평가, PT발표 등 진행
- 2)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의 70% 이내 지급
☞ 협약체결 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참여기업 ⇒ 경과원)
- 3) (중간/완료점검) 사업 진척도(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오류 등 점검
- 4) (최종 완료보고)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5) (지원금 잔금 지급 및 정산) 최종보고서 검토 후 지원금 잔금(30%)을 참여기업에게 지급
※ 참여기업은 지원금 정산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액분 발생 시 경과원에 반납

■ ② 노후 생산설비 개선 지원 [최대 지원한도 2천만원]

- (목적) 사업장 공장 내 뿌리공정 관련 생산라인 등 노후된 설비 또는 장비부품 등에 대한 개선 및 개보수, 교체비 지원
- (지원범위)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지원(자부담 20% 이상)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2,000만원
- (지원내용) 노후 생산설비 장비개선 교체지원

구분	주요내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공장 내 뿌리공정 관련 생산라인 등 노후된 설비 또는 장비부품 등에 대한 개선개보수, 교체비 지원 ※ 개선을 통해 뚜렷한 생산성 향상 또는 효율개선 결과 필수 ※ 일반시설 휴게실, 사무실, 간판, 인테리어, 식당 등 및 범용성 장비PC, TV등 제외 ※ 생산성 향상에 직접 관계가 없는 단순 장비 교체 작업대, 공구대, 적재대 등 제외

■ ③ 유해화학물질 개선 지원 [최대 지원한도 1천만원]

- (목적) 「화학물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시설 개선비 지원
- (지원범위)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지원(자부담 20% 이상)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000만원
- (지원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지원

구분	주요내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출입구와 비상구 방화문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② 누출 이상 발생 경보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③ 비상샤워시설 및 세안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④ 기타 화관법 대응을 위한 재료비 지원 안전장구 구매 또는 ①-③ 이외의 시설 개선 사항

■ ④ 시제품 제작 지원 [최대 지원한도 2천만원]

- (목적) 신규 아이템 창출, 제품 테스트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 등의 과제를 추진하는 뿌리기업에 소요비용 지원
- (지원범위)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지원(자부담 20% 이상)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2,000만원
- (지원내용) 시제품 또는 금형 제작 지원

구분	주요내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형) 제품 양산을 위한 금형 제작비 지원 • (시제품) 제품 개발 및 기능개선(업그레이드 등)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경비 지원 ※ 단, 프로그램(소프트웨어) 개발 등은 지원 불가

⑤ 시험분석 지원 [최대 지원한도 1백만원]

- (목적) 뿌리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성능 신뢰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성능성분 시험인증비용 지원
- (지원범위)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지원(자부담 20% 이상)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백만원
- (지원내용) 시험분석 지원

구분	주요내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성능, 신뢰도 확인을 위한 시험인증비용 지원 ※ 공인기관을 통한 시험분석만 인정(자체 시험분석 불인정)

⑥ 인증획득 지원 [최대 지원한도 1천만원]

- (목적) 국내외 대기업, 원청업체 요구 등으로 품질산업 안전 인증이 필요한 기업에 별도의 컨설팅 진행 등을 통해 신규 인증획득을 위한 전 과정 지원
- (지원범위)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지원(자부담 20% 이상)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0만원 ~ 1,000만원
- (지원내용) 인증획득 지원

구분	주요내용	지원금액
공급자 품질인증	• IATF16949, 현대기아 자동차 SQ인증	최대 1,000만원
시스템인증 기술제품인증	• ISO45001안전, ISO14001환경, KS인증	최대 400만원
혁신형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부품전문기업	최대 300만원

⑦ 기업애로 컨설팅 지원 [최대 지원한도 3백만원]

- (목적)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하여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영 애로 해소를 지원
- (지원범위)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지원(자부담 20% 이상)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0만원 (300,000원/일 A급 전문가 수당 기준)
- (지원내용) 기업애로 컨설팅

구분	주요내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뿌리기술, 인사/노무, 재무회계, 생산관리, 판로개척, 마케팅 전략, R&D과제 기획, 업종전환 컨설팅 지원 등

■ ⑧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최대 지원한도 4백만원]

- (목적) 국내외 부품소재 및 자동차 등 산업전시회, 수출상담회 참가를 지원하여 도내 뿌리기업 제품 전시와 홍보지원
- (지원범위)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지원(자부담 20% 이상)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400만원 (국내 300만원, 해외 400만원)
- (지원내용)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구분	주요내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및 해외 전시회, 산업전 참가 소요비용 지원 • (해당) 부스 임차료, 장치비, 운송료 등

■ ⑨ 마케팅 지원 [최대 지원한도 3백만원]

- (목적) 기업/제품/기술에 대한 홍보 등 마케팅 지원
- (지원범위)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지원(자부담 20% 이상)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0만원
- (지원내용) 마케팅 지원

구분	주요내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제작, CI 제작, 제품 촬영, 동영상 제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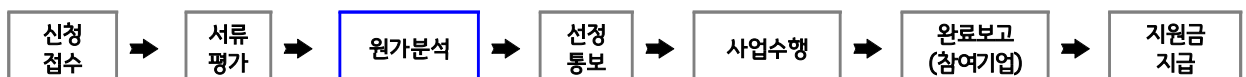
□ 지원절차 및 평가방법

○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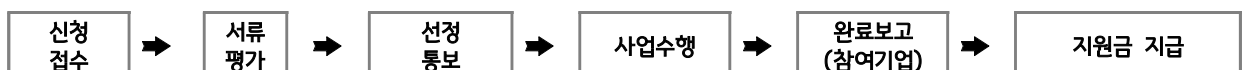
- ①디지털 제조혁신 : [발표평가 및 선정 후 원가분석&선금지급]



- ②생산설비개선, ③유해화학물질 개선, ④시제품 제작 : [원가분석]



- ⑤시험분석 지원, ⑥인증획득, ⑦기업애로컨설팅, ⑧전시회 참가, ⑨마케팅 지원



※ 전담기관이 지정한 원가분석 기관을 통하여 제작비용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함.

※ 원가분석 결과와 견적가의 차이가 5% 미만의 경우 원가분석 결과를 미반영하며, 원가분석 결과와 견적가의 차이가 5% 이상인 경우 원가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소요비용 80%(vat 제외) 이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함

※ 선금(잔금)지급은 디지털 제조혁신 단위사업에만 해당하며, 선정기업 희망 시 선금 지급 진행함. 그 외 단위 사업은 기업에서 소요비용 선 집행 후 지출증빙서류와 결과보고를 제출 시 사후 정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함

○ 평가방법 (평가표 서식 참조)

- (서류평가, 발표심사)

해당 분야 : ①디지털 제조혁신

☞ 심사위원 점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지역별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

- (서류평가)

해당 분야 : ②노후 생산설비 개선, ③유해화학물질 개선, ④시제품 제작, ⑤시험분석 지원, ⑥인증획득, ⑦기업애로 컨설팅, ⑧전시회 참가, ⑨마케팅

☞ 심사점수 60점 이상일 경우 지역별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

- 선정기업의 중도포기에 대비하여 미선정 기업 중 평가점수 60점 이상 기업에 대하여 예비기업으로 선정 후 차순위로 지원 예정

- (동일 점수일 경우) 다음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함

- 1) 10인 미만의 영세 소공인
- 2) 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신규 기업
- 3) 창업 5년 이내 기업

□ 모집개요

- (공고명) 2025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모집기간) 2025. 3. 14.(금) ~ 4. 14.(월) 17:00까지
- (모집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뿌리기술 기업
 - 사업비 출연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도내 뿌리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21.12.16. 시행)으로 뿌리산업 분야 확대
 - 6개 핵심소재
 - ※ (기존 1개) ① 금속
 - ※ (추가 5개) ② 세라믹 ③ 플라스틱 ④ 고무 ⑤ 탄소 ⑥ 펄프
 - 14개 뿌리기술
 - ※ (기존 6개) ① 주조 ② 금형 ③ 소성가공 ④ 용접 ⑤ 열처리 ⑥ 표면처리
 - ※ (소재다원화 4개) ⑦ 사출·프레스 ⑧ 3D프린팅 ⑨ 정밀가공 ⑩ 엔지니어링 설계
 - ※ (플랫폼기술 4개) ⑪ 산업자능형SW ⑫ 센서 ⑬ 로봇 ⑭ 산업용 필름 및 지류

□ 접수방법

- (신청방법)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 및 온라인 제출
 -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후 지원사업명에서 “2025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검색하여 신청 완료

□ 신청제한 대상

신청 제한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등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채무불이행을 선정평가 시행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할 경우
- 사업기간 중 타 시군으로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또는 금융기관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
- 공고일 기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
- 전년도 수혜기업의 경우 동일한 단위사업의 동일 과제일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기업(디지털제조혁신 분야에 해당) 등

□ 제출서류

구분	연번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필수	①	참가신청서(지정양식)	⑦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
	②	사업계획서(지정양식)	⑧	('24.12월말 귀속)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서류 제출
	④	공장등록증 *경기도에 공장 소재 시 제출	⑩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지정양식)	⑪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공고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⑥	중복지원금지사항 및 평가결과확인서(지정양식)	⑫	주업종코드확인서
선택 (해당시)	①	지식재산권 보유자료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뿌리기업확인서 또는 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증 *가점없음		
	④	회사 소개자료		
	⑤	지역특화 「레전드50+」참여기업(3점가점), 산단RE100 기업(2점가점), 가족친화기업(2점가점), 납품연동제우수기업(1점가점),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기업(5점가점), 의왕시 우수중소기업(5점가점) 안성시 3대 핵심전략업종(반도체 소부장 분야, 식품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_3점가점)		

※ 제출서류는 각 항목에 맞게 업로드 후 **전체 파일 압축본을 기타파일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청기업은 모집요강의 지원금 사용 기준을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상의 모든 항목은 평가점수에 반영되며, 작성 항목 중 미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평가 결과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책임은 기업에 있음
- 제출서류는 접수일 마감까지 접수된 자료에 한하여 인정되며, 미제출 시 평가대상 제외함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심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에도 제출서류가 허위로 발각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미 기재된 사항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운영지침 준용함

□ 문의처

지역	담당자	연락처
광명, 군포, 부천, 시흥, 안성	홍성신 차장	sshong@gbsa.or.kr / 031-259-6535
연천, 포천	이현주 과장	hjlee@gbsa.or.kr / 031-850-3673
김포, 수원, 용인, 의왕, 화성	최문영 대리	choimy@gbsa.or.kr / 031-259-6537

※ 전화연결이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문의는 되도록 메일로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1] 자주 묻는 질문(FAQ)

1. 일반 제조업(서비스업)은 신청할 수 없나요?

☞ 네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뿌리기술 기업(참고2,3 P.11~15 참조)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주업종코드확인서 발급과 산업 업종 코드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주업종코드확인서 발급(제출 필수)이 가능합니다.
☞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한국표준산업분류 → 검색 → 분류검색 →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확인 및 검색 → 해당업종 및 분류코드 확인

3. ‘뿌리기업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온라인 신청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소요기간이 최대 15일 소요되며 기한 내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의 경우 책임은 기업에 있습니다.

3. 사업 신청 건수 제한은 없나요?

☞ 건수 제한은 없습니다. 단, **기업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디지털 제조혁신 한 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거나, 단위 사업 중 한도별 금액을 확인하신 후 최종 신청금액이 5천만원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4. 사업마다 지원금 지급 절차가 다른가요?

☞ 총 3개 분야 9개 단위 사업 중 “선금” 지급은 디지털 제조혁신 사업에만 해당(기업희망사)하며, 그 외 8개 사업은 사후 지원 형태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에, 디지털 제조혁신 사업 참여기업은 협약 체결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필요합니다.

5. 사업 선정 후 다른 단위 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 **다른 단위 사업으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 예시: 시제품 제작 → 노후생산설비 개선 변경 등, 예시와 같은 변경은 어렵습니다.

6. 중간에 사업을 취소하거나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다음 연도 사업에 참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 취소나 포기는 지양합니다.

7. 12개 시군 외 다른 지역은 모집을 안하나요?

☞ 현재 공고를 진행하는 12개 시군을 제외한 지자체는 현재는 예정이 없으나, 추진 상황에 따라 모집공고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8. 사업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 지역별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시제조혁신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역	담당자	연락처
광명, 군포, 부천, 시흥, 안성	홍성신 차장	sshong@gbsa.or.kr
연천, 포천	이현주 과장	hjlee@gbsa.or.kr
김포, 수원, 용인, 의왕, 화성	최문영 대리	choimy@gbsa.or.kr

※ 안산시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경기테크노파크(☎031-500-3035)로 문의 요망

뿌리기술의 범위(제2조)

□ 기반 공정기술

기술부문	전문분야
1. 주조부문	가. 사형주조 나. 금형주조 다. 다이캐스팅(Die casting) 라. 정밀주조 마. 연속주조 바. 저압주조 사. 소실모형 주조 아. 특수주조
2. 금형부문	가. 사출성형금형 나. 다색다중성형금형 다. 블로우성형금형 라. 복합성형금형 마. 프레스성형금형 바. 프로그레시브성형금형 사. 파인블랭킹금형 아. 특수성형금형
3. 소성가공부문	가. 단조 나. 압연 다. 압출 라. 판재성형 마. 특수성형
4. 용접 부문	가. 아크용접 나. 저항용접 다. 특수용접 라. 브레이징(Brazing) 마. 칩레벨 접합(Chip level joining) 바. 보드레벨 접합(Board level joining) 사. 구조용 접합
5. 표면처리 부문	가. 전기도금 나. 무전해도금 다. 양극산화 라. 화성처리 마. 도장 바. 표면경화 사. 스퍼터링(Spurrering) 아. 화학기상증착
6. 열처리 부문	가. 전경화열처리 나. 국부열처리 다. 칩탄열처리 라. 질화열처리 마. 복합열처리 바. 비철, 특수금속열처리

□ 차세대 공정기술

○ 소재 다원화 공정기술

기술부문	전문분야
1. 사출/프레스 부문	가. 고분자 가공기술 나. 고분자 성형기술 다. 복합재료 제조공정 기술
2. 정밀가공 부문	가. 절삭가공 나. 연삭가공 다. 연마가공 라. 광에너지응용가공 마. 전기에너지응용가공 바. 화학에너지응용가공
3. 적층(積層) 제조 부문	가. 분말가공기술 나. 용융기술 다. 기타 적층 관련 기술
4. 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 부문	가. 고분자 박막제조기술 나. 고분자 코팅제조기술 다. 제지공정

○ 지능화 공정기술

기술부문	전문분야
1. 로봇 부문	가. 로봇생산자동화기술 나. 로봇 관련 정보기술·소프트웨어 다. 자동화기계 관련 정보기술·소프트웨어
2. 센서 부문	가. 계측기술 나. 센서기술 다. 시스템통합화기술
3.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부문	가. 소프트웨어 솔루션 나. 생산관리 서비스 다. 계량분석 서비스 라. 시험관리 서비스 마. 검사관리 서비스 바. 분석관리 서비스 사. 품질관리 서비스
4. 엔지니어링 설계 부문	가. 설계기술 나. 생산공정모델링 서비스 다. 시뮬레이션 서비스 라. 컴퓨터 이용 설계(CAD) 관련 소프트웨어 마. 컴퓨터 이용 제조(CAM) 관련 소프트웨어 바. 구조 관련 소프트웨어 사. 용접 관련 소프트웨어 아. 소성가공 관련 소프트웨어 자. 기타 뿌리기술 관련 소프트웨어

뿌리산업의 범위(제3조)

□ 기반 공정산업

1) 주조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30101	주물주조기계
2) 금형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 소성가공 산업		
뿌리기술 활용업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4101
29224102		기계 프레스
29224801		금속 단조기
29224802		금속 인발기
29224803		나사 전조기
29224804		금속선 가공기
29224809		기타 금속성형기계
4) 용접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 업종	24132	강관 제조업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2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5995100	용접봉
	27216109	기타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28909301	아크 용접기
	28909302	저항 용접기
	28909309	기타 전기용접기
	29199201	가스 용접기 및 절단기
	29199209	기타 용접기
	29271102	반도체 조립 장비
29271103	칩마운터(Chip mounter)	
5) 표면처리 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13401	솜 및 실 염색가공업
	13402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가공업
	13403	날염 가공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0499210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8909804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29299104	금속 표면처리기
6) 열처리 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5921	금속 열처리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150101	공업용로
	29150103	전기로

□ 차세대 공정산업

○ 소재다원화 공정산업

1) 사출·프레스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92101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29292102	플라스틱 압출 성형기
	29292103	진공 및 열 성형기
	29292109	기타 플라스틱 제조기계
	29292200	고무 가공기계

2) 정밀 가공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1101	레이저 가공기
	29221102	방전 가공기
	29221109	기타 전자응용 절삭기계
	29223101	머시닝센터
	29223102	전용기
	29223201	수치제어식선반
	29223202	범용선반
	29223801	드릴링기
	29223802	보링기
	29223803	밀링기
	29223804	탭핑기
	29223805	연삭기
	29223806	기어절삭기
	29223807	톱기계(금속용)
29223809	기타 금속절삭가공기계	
3) 적층(積層) 제조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단, 복층절연유리에 한함)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2100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4)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91109	기타종이가공기계

○ 지능화 공정산업

1) 로봇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 센서산업		
뿌리기술 활용업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3)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산업		
뿌리기술 활용업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단, 비파괴검사에 한함)
4) 엔지니어링 설계산업		
뿌리기술 활용업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